

NAJU-SI WEB CONTENTS



2019년 11월 15일 15시 20분

Table of Contents

Table of Contents	2
청소년유해환경	3

※ 과징금 -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

대상	행위자	위반행위	위반 시 형사처벌	과징금
청소년 성적접대 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 (업주, 매개·알선자 등)	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제26조의2 제1호 :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(법제 49조의2)	-
청소년 유흥접객 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 (업주, 매개·알선자 등)	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제26조의2 제2호 :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10년이하 징역 (법제49조의3)	-
청소년 음란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 (업주 등)	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제26조의2 제3호 :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10년이하 징역 (법제49조의3)	-
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	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제26조의2 제4호 :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5년이하 징역 (법제49조의4)	-
청소년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	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※ 제26조의2 제5호 :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5년이하 징역 (법제49조4)	-
청소년 학대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 (보호·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)	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※ 제26조의2 제6호 :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5년이하 징역 (법제49조의4)	-
청소년 호객행위 금지위반	누구든지 (유흥업소 업주 등)	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※ 제26조의2 제7호 :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(법제50조제4호)	위반횟수 마다 300 만원

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

NAJU-SI WEB CONTENTS



NAJU 나주시